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제3호를 삭제함
-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6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내역 등을 주민대표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11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물보상 외 방식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되는 분양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386